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7 선고 2022가단1320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0. 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지분에 관하여 2017. 8. 11.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9,047,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4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소송비용은 원고 청구취지에 따라 각자 부담을 명한다)

판사 설민수

목 록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안양시 D

목조, 시멘트브록조 시멘트기와,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1층 39.34㎡

1층 5.44㎡

1층 4.34㎡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E

(토지의 표시)

1. 경상북도 안동시 D 대 109㎡

끝.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

가. 소외 F 주식회사의 소외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합니다.)는 소외 C에게 2002.08.28.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고, 소외 C은 신용카드대금 중 원리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2003.06.30. 소외 G 유한회사로 양도, 2009.03.11. H 주식회사로 양도, 2011.07.01. I(변경후 주식회사)으로 상호변경)로 양도, 2021.04.15.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양도하였으며 소외 (주)J은 소외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53277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C은 8,765,213원과 그 중 1,892,600원에 대하여 2017.08.0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2017.07.12. 하였고 2017.07.17. 송달되어 2017.08.01.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22.04.13.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갑 제1호증의1 결정문, 갑 제1호증의 2 송달,확정증명 및 승계집행문)

나. 채권내역

한편, 소외 C에 대한 원고의 채권액은 2022.07.11. 기준 10,169,107원입니다.

(갑 제2호증 이자계산서).

2. 사해행위취소

가. 소외 의 사망과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인 소외 C의 '(父)'인 소외 K이 2021.07.29 사망하자 소외 C은 상속인으로서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중 2/5지분에 관하여(소외 C의 상속지분은 소외 땅 K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인들을 파악하여야 하는바, 이는 추후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정확히 하기로 하고, 일단 소외 C의 상속분을 2/5이라고 가정합니다) 2021.08.23.에 2021.07.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접수 제25858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갑 제3호증의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나. 사해행위로서의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소외 C은 2017.08.11.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의 유일한 잠재적 재

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모(母)인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그러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결과로써 소외 C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소외 C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소외 C의 무자력

소외 C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소유자도 소외 C의 자녀명의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이 그의 유일한 재산으로 다른 재산이 없는바, 소외 C의 원고에 대한 판결문 채무만을 감안하더라도 소외 C이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즉, 공동담보 부족) 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욱 악화됨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라. 피보전권리

1)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2)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위 매매계약 이전인 2002.08.28.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합니다.)는 소외 C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고, 소외 C은 원리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2003.06.30. 소외 G 유한회사로 양도, 2009.03.11. H 주식회사로 양도,

2011.07.01. I(변경후 주식회사]으로 상호변경)로 양도, 2021.04.15.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 F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4호증의 1 양도양수계약서, 갑 제4호증의 2 양도통지서)

마. 채무자(소외 C) 및 수익자의 악의

1) 소외 C은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무자력이 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채무자인 소외 이병권의 사해의 의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더욱이,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대법원판례는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피고 역시 소외 C과 ‘모녀지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악의(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소외 C이 무자력이 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임이 명백하고,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원상회복(가액배상)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C은 피고 사이의 2021.07.29.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2/5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

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 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 바(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2,617,500원(토지대장 공시지가액)이나 실제 거래금액은 상기 금액을 초과하므로 우선 2/5지분인 9,047,000원이 일반채권자들에게 인정되는 책임재산이고, 이는 원고의 채권액에 미달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액배상액은 원고의 채권액인 9,0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하겠습니까.

(갑 제3호증의 2 토지대장 공시지가 참조)

4. 이 사건의 토지관할

가. 대법원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대법원 결정에 따를 때 원물반환과는 달리 가액배상의 경우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는 채권채무관계이고, 실체법이 특정물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참채무의 원칙(민법 제467조)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토지관할은 민사소송법 제8조 후단에 따라 원고의 본점 주소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인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의 취소와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